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 결 사 항	
------------------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1. 17.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 당항포관광지를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개장 및 휴장,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 다. 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행위제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52조, 제69조
- 나. 예산조치: 예산 반영
-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복지지원과-41416(2023. 10. 30.)]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548호

가) 예고기간: 2023. 10. 12. ~ 2023. 11. 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2. 위치: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

제3조(개장 및 휴장) ①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② 관광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관광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그날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고성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장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 ① 관광지 이용객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② 주요 관광시설 또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등) ①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

①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유료관람객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람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은 내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20퍼센트, 외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30퍼센트로 하고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상 지급은 지급신청서에 따라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참가자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장 찍기 여행
2. 보물찾기 체험
3. 가상현실 증강 체험

제9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과 술을 반입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사람(다만, 도시락류 등의 간단한 음식물을 먹는 행위와 오토캠핑장에서 취사는 제외)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입장료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보통권	우대권		
개 인	7,000	3,500	5,000	4,000
단체 (20인 이상)	6,000	3,000	4,000	3,000
고성군민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적용)	1,000	1,000	1,000	1,000
비 고	19세~64세	65세 이상		

※ 비 고

1.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 및 청소년 이외인 사람
2. 군 인: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의무경찰을 말한다.
3.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4. 어린이: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 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시설사용료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주차장	이륜차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50/100 경감 • 무료: 군민, 제3주차장 이용객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	3,000		
	승합차 (16인승 이상)	4,000		
	화물차	4,000		
트램카	1회 이용권	2,000		
	2회 이용권	3,000		
주제관	입체영상관	2,000	4D	
	가상현실체험존	2,000	XR	
펜션 (52.0제곱미터)	성수기	1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준: 1실/4인(최대 6인) - 1인 추가 시마다 사용료 10,000원 추가 • 성수기: 7.15.~8.24.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비수기	주말		120,000
		주중		100,000
돛형펜션 (26.0제곱미터)	성수기	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준: 1구간/4인 - 1인 추가시마다 사용료 5,000원 추가 - 차량 1대 기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 - 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비수기	주말		60,000
		주중		50,000
오토캠핑장	S사이트	1구간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준: 1구간/4인 - 1인 추가시마다 사용료 5,000원 추가 - 차량 1대 기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 - 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1박 추가	30,000	
	그 외 사이트	1구간	45,000	
		1박 추가	30,000	

입장료 감면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면제대상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학술조사단
- 3세 미만의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 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입장료 일부 감경대상

고성군 외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장 전날 또는 그날 관내에서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한 이용객. 다만, 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전체 입장료의 30퍼센트(4인 이내)
- 5만원 이상: 전체 입장료의 40퍼센트(4인 이내)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 주차료의 100분의 50 감경 대상

- 경형자동차(1천시시 이하)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소유자동차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지(참전고엽제, 5·18민주유공자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

2. 오토캠핑장 10,000원 감경 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유 형	반환 및 배상기준	비고
<input type="checkbox"/>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0% 배상	
<input type="checkbox"/>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 사용료 전액 반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제8조제2항과 관련)

□ 보상금 신청자

여행사명 (단체명)		대표자	(남/여)
주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 (FAX :)		

□ 관람객 유치현황

관람일자	관람인원			성 별		인 솔 자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남	여	성 명	연 락 처	

□ 보상금 신청내역

구 분	인원(명)	입장료(원)	보상금지급액(원)	비 고
계				
내 국 인				입장료의 20%이내
외 국 인				입장료의 30%이내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입장료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당항포관광지 관리·운영

나. 비용발생 요인: 당항포관광지 관리·운영 및 기간제 채용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당항포관광지 관리·운영 및 기간제 채용

2) 사업규모 (단위: m²)

구분	계	공공편의 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휴양 오락시설	녹지 및 기타시설
면적	544,981	124,417	4,620	5,727	156,416	253,801
비율(%)	100	22.8	0.85	1.05	28.7	46.6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1,300	1,400	1,400	1,500	1,500	7,100
세출	3,300	3,400	3,400	3,500	3,500	17,100

다. 재원조달방안: 고성군 자체재원(군비)

작성자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